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91
----------	------

발의연월일 : 2020. 12. 17.

발 의 자 : 정춘숙 · 강민정 · 권인숙  
김상희 · 김윤덕 · 윤미향  
윤후덕 · 이규민 · 이용빈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으로 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구금·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이들의 자녀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국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위안부 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서 주택으로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피해자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국적 회복 및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해자등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관한 위로·추모 및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피해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1조 및 제23조).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기지촌”이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판매·유흥행위 및接客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같은 법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을 말한다.
2. “미군 위안부 문제”란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성병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통칭한다.

3. “피해자”란 미군 위안부 문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장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 ①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사항
2.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피해자등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장례비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7. 피해자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 및 입주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군 위안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피해자들은 피해자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제10조(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제11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본다)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피해자등의 신고처 설치 및 공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제13조(재심의)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장례비의 지급 및 주택의 우선 공급, 입주지원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명예회복 사업 등

제14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미군 위안부 문제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保障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중에서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활지원금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그 밖에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례비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례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택의 우선 공급 및 입주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 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적 회복 및 정착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던 피해자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피해자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적 회복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피해자 지원시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7.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8.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지원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등에 관한 위로 및 추모 등 기념사업
2. 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관 및 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미군 위안부 문제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제26조(지원금의 환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등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